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 정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과 관련한 영농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이하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연초경작과 관련한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기준은 다른 규정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 연구사업의 지원대상은 잎담배 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사업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과제 심의·선정 및 평가를 위해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재단,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및 케이티앤지의 업무관련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재단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1. 재단 사무국장, 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 담당자 1인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업무담당자 1인
3.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업무담당자 1인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1. 연구사업 심의·선정 및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평가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계획 수립) 재단은 연초생산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사업과 연구과제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연구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사업을 다음연도 연초생산안정화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7조(연구과제의 구분) ①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는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연구기간에 따라 단기연구 및 장기연구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 연초경작을 위한 생력화 기자재 개발
2. 연초경작 관련 재배기술 연구개발
3. 잎담배 품종관련 연구 시험
4.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5. 기타 연초생산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단기연구 및 장기연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기연구는 연구기간 1년 이내로 당년에 결과도출이 가능한 연구
2. 장기연구는 연구 및 결과도출에 1년을 초과한 기간이 필요한 연구

제8조(선정 통보) 「사업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원이 확정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연구사업자가 연구사업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연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지속 추진 한다.

제10조(확인 및 관리) 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사업자에게 중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연구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연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1조(결과확인 및 평가) ①매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별 추진 실적 및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종료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지급시기) 연구사업 지원금은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2. 장기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계획서에 따라 연도별 지원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제13조(지원금 청구 및 지급) 연구사업 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사업자의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진행상황 확인 및 보고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연구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